

의안검토보고

| | | | |
|------|---|-------|-------------|
| 의안번호 | 제110호 | | |
| 의안명 | 서울특별시 서초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광민의원 발의) | | |
| 발의자 | 고광민의원 | 발의연월일 | 2019.04.30. |
| 위원회 | 행정복지위원회 | 전문위원 | 심경석 |

I. 제안내용

1. 제안이유

-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원대상 시설 및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함(안 제6조)
 1.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미세먼지 보호 장비와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 지원
 2. 그 밖에 구청장이 미세먼지 발생 및 피해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
- 나. 예산조치 : 예산 반영 필요
- 다. 주관부서 : 푸른환경과

II. 검토 의견

1. 조례 개정의 배경

- 본 개정 조례안의 목적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원대상 시설 및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도모하기 위한 것임.
- 미세먼지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매우 작기 때문에 호흡기계 질병을 악화시키고, 폐 기능 저하를 초래하여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2013년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였음.
- 우리나라의 대기오염은 내·외적 요인에 의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며, 서울시의 경우 연간 미세먼지(PM_{10})와 초미세먼지($PM_{2.5}$)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일이 2017년에 11일, 2018년에 14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4월 23일까지 무려 19일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의 심각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임.
-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심각성으로 인하여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에 포함시키고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재난사태 선포,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다중이용시설 미세먼지 측정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대기관리권역의 지정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사업장에 대기오염총량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대기관리권역 대기질 개선 특별법」 등 미세먼지 저감 관련 법률안이 2019.3월에 개정·공포되었음.

- 한편,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공기청정기 및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서초구의 경우에는 2017.12.14일 「서초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이후 2018년부터 노인복지관, 경로당, 기초생활수급자(65세 이상)를 대상으로 미세먼지 마스크를 지급하고 있음. 지원금액은 2018년도에 2,7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19년도에 4,5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임.

<2019년도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 실적(계획)>

| 구 분 | 2018년 | 2019년 |
|---------------------|---|--|
| 노인복지관 | 6,900천원 (1,000원 × 3개소 × 1,150개 × 2회) | 14,400천원 (1,200원 × 3개소 × 2,000개 × 2회) |
| 경로당 | 15,960천원 (1,000원 × 133개소 × 30개 × 4회) | 12,768천원 (1,200원 × 133개소 × 40개 × 2회) |
| 기초생활수급자 (65세 이상) | 4,215천원 (1,000원 × 843명 × 5개) | 14,400천원 (1,200원 × 1,200명 × 10개) |
| 계 | 27,075천원 | 45,168천원 |

- 본 개정조례안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시설명을 세분하여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집, 경로당, 노인복지관, 기초생활수급자(65세 이상)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취약계층 중 외부 활동량이 가장 많은 초등학교, 유치원에 미세먼지 보호 장비와 미세먼지 저감시설의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것임.

- 참고로 본 개정 조례안과 같이 미세먼지 지원 대상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자치구는 미세먼지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용하는 21개 자치구 중 마포구, 영등포구를 비롯한 15개 자치구가 해당되는 것으로 조사됨.

2. 주요 내용 검토

1)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안 제6조)

- 안 제6조에서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지원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였음.
- 이는 상위법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에 부합되는 규정이며, 미세먼지 관련 사업의 실효성 제고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Ⅲ. 참고자료

1. 관계법규

2. 관내 초등학교 현황 자료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미세먼지로 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이하 “미세먼지등”이라 한다)의 배출 저감 및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국민 교육·홍보 등을 강화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변국과 협력하여야 한다.

※ 초등학교24개교[공립:22,국립:1,사립:1] 880학급, 총 23,175명

(2018. 7 기준, 단위 : 명)

| 연번 | 학교명 | 학급수 | 총학생수 |
|----|------|-----|-------|
| 1 | 계성초 | 24 | 727 |
| 2 | 교대부초 | 27 | 631 |
| 3 | 매현초 | 30 | 656 |
| 4 | 반원초 | 50 | 1,394 |
| 5 | 반포초 | 38 | 1,022 |
| 6 | 방배초 | 42 | 994 |
| 7 | 방일초 | 34 | 868 |
| 8 | 방현초 | 16 | 329 |
| 9 | 서래초 | 47 | 1,356 |
| 10 | 서원초 | 39 | 982 |
| 11 | 서이초 | 44 | 1,056 |
| 12 | 서일초 | 24 | 554 |
| 13 | 서초초 | 35 | 963 |
| 14 | 신동초 | 47 | 1,555 |
| 15 | 신중초 | 37 | 879 |
| 16 | 양재초 | 26 | 592 |
| 17 | 언남초 | 43 | 962 |
| 18 | 우면초 | 45 | 1,344 |
| 19 | 우슬초 | 37 | 860 |
| 20 | 우암초 | 18 | 374 |
| 21 | 원명초 | 42 | 1,351 |
| 22 | 원촌초 | 44 | 1,314 |
| 23 | 이수초 | 31 | 657 |
| 24 | 잠원초 | 60 | 1,755 |